

지 정 토 론

◎ 오광건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세상을 규율하는 법은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늘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입법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의 발제도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시의적절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 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입법 과정은 지난하고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 교수님의 제안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 현 법률 체제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나눠보고, 각각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이번 토론의 결과물들이 언론분쟁 현장이나 입법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발제문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 저장,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게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복제·전파된 침해적 보도(언론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사 등의 보도나 매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침해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동일한 보도의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상 언론으로 정의되지 않은 곳으로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에는 ‘정보’로 취급되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법 개정 없이 현행법 체제에서도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페이지,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언론의 기사는 조정 대상으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봅니다. 이런 생각은 포털의 관리책임의 범위를 밝힌 대법원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 내용을 적용한다면 각 포털들은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 게시 공간의 게시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원 기사 제공 언론사와의 조정 등을 통해 허위사실 기사로 밝혀진 내용이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면 그 불법 게시물의 삭제의무를 부담하는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이 정정청구 등의 상대방을 기업인 ‘언론사’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 운영자인 블로그 운영자를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블로그 등의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포털을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으로 삼아 조정을 진행한다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생

각입니다.

둘째, 발제문은 생산된 보도의 저장이 영구적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역시 기존의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의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개정 없이도 실천 가능한 제도로 보입니다. 실무상 조정 현장에서는 기사삭제에 관한 조정합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거는 조정의 근본취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고수하는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소송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를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재부의 의견을 결정으로 피력해야 할 때 즉, 직권조정결정 시에는 법문에 해당 권리 규정이 없는 기사삭제로 결정하는 것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법 개정 없이 현 법률체제 하에서도 즉시 실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 제안사항에 대한 실행은 추후에 있을 법개정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논리로 작용하여 법개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토론회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안사항은 기사삭제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는 주장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송기사는 전파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보도되는 순간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고, 신문·잡지 등 인쇄물도 보도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 생산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반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도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 시점에서 검색될 수 있어 전통 매체에 적용돼 오던 권리의 시효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사삭제청구권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때, 실체 법상의 근거규정을 인격권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성격에 주목하여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규정인 민법 제214조 규정에서 찾기도 합니다(양재규, 2006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발제).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지속되는 한 시효 없이 해당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시효 없이 기사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가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송물, 인쇄물이 전자적으로 보관돼 있음을 가정할 때, 이러한 권한 행사의 잠재성은 언론사로 하여금 소송의 개연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하고, 그로 인해 언제까지라도 언론사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서까지 기사삭제청구권을 정식 피해구제 절차로 도입하면서 소멸시효(위원회 조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음)를 배제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언론중재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절차에서야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인격권의 주체가 사망하지 않는 한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서는 그 입법취지나 언론사를 한정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둬으로써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조정신청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과 인터넷 언론의 특성, 현행 언론중재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하면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사는 소송상의 부담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문은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처리를 조정절차로 포섭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포털의 언론기사에 부수되어 있고, 조정으로 게재물 삭제가 가능하다는 앞서의 논리대로라면 법률 개정 없이 댓글에 대한 처리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법률 개정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하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절차를 설명하는 법조항도 대체로 같은 형식의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 이어야 할 것과 “언론보도”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은 특정 기사에 달려 있지만 그 생산자는 언론기업이 아니고 인터넷 사용자들인 일반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댓글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거나 심지어 욕설 등의 감정이 담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바, 우리는 그 같은 내용을 사실적 주장이 아닌 가치평가에 관한 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도 아닌 댓글을 조정대상으로 삼으려면 법개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의 폐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그 해결을 위해 사실적주장과 언론보도 등의 현행 법률문구를 수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틀을 상당히 크게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여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문제된 기사가 삭제될 경우 그에 부수된 댓글들도 같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된 댓글의 작성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더라도 문제된 언론의 기사를 삭제하는 간접방식으로 문제의 댓글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저의 주장이 더욱 다듬어 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이번 발제를 통해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많이 던져주셨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언론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오늘의 토론에 투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서는 포털뉴스서비스나 인터넷신문의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조정신청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뉴스 소비가 많아지고 있어 뉴스의 중심이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실시간 뉴스 검색에서 10위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검색 1등은 소녀시대 유리와 오승환의 열애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뉴스 소비의 특징이 말초적이고 관능적이며 흥미 위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소비 행태로 인해 흥미 위주의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 오보가 자연